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7회 임시회(2022. 9. 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2-64
----------	-------

2022. 9. 1.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
- 나. 제 출 일 : 2022. 8. 19.
- 다. 회 부 일 : 2022. 8. 22.

2. 제출이유

옥외광고물 등으로부터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를 전문적 기술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1) 추진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 2) 추진 필요성
 -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바, 전문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함

-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연장포함) 대상 광고물 안전점검
- 풍수해 등 재난·재해 안전사고 위험 광고물 안전점검 등
- 추락 등 안전사고 유발 위험 광고물에 대해 즉각 조치 포함

라. 위탁기간 : 2022. 7. 1. ~ 2025. 6. 30.(3년)

마. 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 협약

바. 소요예산 : 연 4,8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

4. 검토의견

가. 제출 배경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2. 6.30.자로 만료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옥외광고물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옥상간판과 일정높이 이상의 광고물, 애드벌룬, 현수막게시시설 등에 안전점검 의무 사항을 전문자격과 시설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전점검에 대한 효율성과 사고 예방 및 옥외광고물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09년 최초 민간위탁을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와 협약하고 계약한 이후로 구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5조 제1항에서는 민간위탁의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의 없이 지난 2022년 6월 29일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 결정을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는 등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효율성, 수탁자 선정 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법령의 입법목적을 저해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됨.
- 따라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경위와 의회 동의 절차 미이행 사유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1) 지방자치법 제104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한 곳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중략>
- ⑤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